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13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의자 : 임종득 · 강선영 · 서천호

김석기 · 김재섭 · 권영진

강명구 · 김예지 · 성일종

서지영 · 안철수 · 이준석

김성원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훼손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제38조).

그러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선고형 역시 낮은 수준에 그쳐 재범 억제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제9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이 내려진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목적을 질적으로 달성하고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8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② 제9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이 내려진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별 칙) ① (생 약)  <u>&lt;신 설&gt;</u></p> <p>② <u>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p>	<p>제38조(별 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9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이 내려진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의-----</u>  -----.</p>